

「1004 나눔적금 특약」

제1조 적용범위

1004 나눔적금 (이하 "이 적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적립식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의 종류

이 적금의 계정과목은 자유적립식적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자격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저소득한 부모가정, 다문화가정(부부), 새터민(탈북민)으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4조 계약기간

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년, 2년, 3년으로 합니다.

제5조 납입한도 및 적립방법

이 적금은 매월 1만원이상 30만원내에서 만기일 1개월전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금리적용

이 적금의 금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고시금리에 제8조 ①항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적용합니다.

제7조 이자

이 적금의 이자는 납입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 6조에서 정한 이율로 쉰한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제8조 우대금리

- ① 이 적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 고시금리에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 3.0%(세전)을 가산하여 제공하며 우대이율은 계약기간동안 적용합니다.
- ② 분할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9조 만기후금리

이 적금을 계약기간 경과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서 고시한 만기후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10조 중도해지

제11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 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봅니다. 이 때 중도해지하는 납입금의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중도해지하는 납입금의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
제11조 특별중도해지

- ① 가입일로부터 계약기간의 1/2 이상 경과한 계좌로 계약기간중에 이 적금의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)이 주택임차, 구입, 결혼, 입학, 출산, 사망으로 중도해지 요청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후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.
중도해지사유별 증빙서류는 각각 주택매매(임차)계약서, 청첩장, 입학통지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원, 사망진단서 등 해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.
- ② 특별중도해지시에는 가입당시의 고시금리를 적용하며, 제8조에서 정하는 우대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12조 분할해지

이 적금은 가입기간중 만기해지분을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
부칙(제정)

이 특약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

부칙(1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